

 재정경제부	보도참고자료		• 풍요로운 나라 함께하는 선진경제 • 고품질 정책으로 신뢰받는 재경부
	보도일시	2007.08.16(목) 11시부터	
생 산 일	2007.8. 16(목)	생산부서	관세제도과
담당과장	문창용 (T: 2150-9310)	담 당 자	이호근 (T: 2150-9311)

제 목: 2007년 관세제도 개편 방향

금년도 관세제도 개편 기본방향은 기업환경 개선, 한-미 FTA 등 주요 국정과제의 성공적 마무리를 지원하고

○ 관세 및 통관제도를 국제수준에 맞게 선진화하는 것임

구체적인 개편 방향은 다음과 같음

① 1만불 이하 소액신고 물품에 대한 가격신고*를 면제** 하는 등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신고제도를 개선하고,

* 수입신고서 상 신고된 수입가격의 산정근거 및 자료를 신고하는 것

** '06년 가격신고 대상 중 48%가 1만불 이하로 건수로는 연간 160만건의 신고서 제출부담 감소

- 보세공장 수입물품에 대한 관리 및 납세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기업환경을 개선

②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여 저작권에 대해서도 상표권과 동일하게 세관신고제도* 및 직권 통관보류제도**를 도입하고,

* 보호받고자하는 저작권을 세관에 미리 등록할 수 있게 함

** 침해가 명백한 물품은 저작권자 신청없이도 세관장이 통관보류

- 짝퉁 물품 및 불법복제물은 수출입자가 담보를 제공하더라도 통관을 불허하도록 규정 강화

③ 본격적인 FTA 확대에 따라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신청 절차는 간소화하되 원산지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

- 농산물 특별긴급관세 등 한-미 FTA 협정 사항도 「FTA 관세특례법」에 반영하였음

④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하고 개도국의 경제 개발 지원을 위해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를 확대*

* 현재 1.8%인 무관세 적용비율을 금년중 75% 이상으로 확대

⑤ 수출입 신고항목을 표준화하고 이를 외국세관과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도입하는 등 물류흐름 원활화를 위한 국제 조류*에 적극 대응

* 국제교역의 안전 및 원활화를 위한 WCO Framework(05.6)

- 수출입신고시 표준화된 자료항목의 사용, 세관 당국간 자료교환,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통관상 편의 제공 등 규정

□ 정부는 8.17(금) 관세심의위원회*를 개최하여 금년도 관세 제도 개편방향을 심의할 예정이며 9월 중 정부안을 확정 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임

* 산자부, 농림부, 관세청 등 관련부처 고위공무원과 무역협회, 대한상의 등 관련기관 간부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(총 20명)

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

<참고>

1. “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신고(가격신고)” 제도

□ 가격신고의 개념

- 가격신고는 수입신고서 상 신고된 수입가격의 산정근거 및 관련자료를 신고하는 것으로,
 - 송품장, 계약서 및 각종 부대비용의 산출근거를 나타내는 증빙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

□ 가격신고 현황

(단위 : 천건)

	총 수입건수	가격신고 대상 건수	
		건수	비율
2004년	4,337	2,670	61.5%
2005년	4,782	3,020	63.1%
2006년	5,216	3,315	63.5%

* 참고 : 정부수입물품, 무세인 물품, 환급대상인 수출용 원재료 등은 가격신고 생략 물품으로 이 때문에 총수입건수와 가격신고 대상 건수에 차이가 있음

- 1만불 이하 소액신고 물품에 대한 가격신고 면제시 331만건의 48%인 160만건에 대한 신고서 제출 부담 감소('06년 기준)

2. 보세공장 원료과세 제도 간소화

□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물품을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에 과세 방법은 제품과세와 원료과세가 있음

○ 보세공장 운영인이 선택 가능(원료과세 적용시 사전 신청 필요)

♠ 제품과세와 원료과세

: 제품과세가 원칙이나 사전 신청이 있는 경우 원료과세 허용

* 제품과세 : 제조된 완제품의 관세율로 과세(완제품 관세율이 낮은 경우 유리)

* 원료과세 : 사용된 원재료의 관세율로 과세(원재료 관세율이 낮은 경우 유리)

□ 그러나, 이중 원료과세제도의 관리 및 과세절차가 복잡하여 활용도가 낮아 이를 개선

○ 기간별 또는 제품별 포괄신청을 허용하고 사용된 원재료의 관리방법도 사전 구분관리 방식에서 회계장부를 통한 사후소요량 관리 체제로 전환

현 행	개 정 안
○ 신청시기 : 보세공장에 원재료 반입시 <u>건별로 신청</u>	○ 신청시기 : <u>포괄신청</u> 허용
○ 원재료관리: <u>명문규정 없음</u> * 실무상 사전신청된 원재료를 별도 구분관리	○ 원재료관리 : <u>회계장부를 통한 사후 소요량 관리</u>

3. 지적재산권 세관신고제도 및 직권통관보류제도

□ 현행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통관보류제도

- 현행 관세법상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표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한 물품의 수출입통관절차를 일시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

- 그러나 현재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현실

구 분	상 표 권	지 작 권
수출입 금지	○	X
세관등록제도	○	X
통관보류요청	○	○
직권통관보류	○	X

□ 지적재산권 세관신고제도의 개념

- 보호받고자 하는 상표권 또는 저작권을 미리 세관에 신고하면 침해우려물품 수출입시 세관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음

□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직권통관보류제도 개념

- 상표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가 명백한 경우에는 권리자의 요청 없이도 세관장이 직권으로 통관을 보류함

- 저작권에 대한 보호 강화는 한-미 FTA 합의 사항이며 국내 캐릭터 상품에 대한 침해 방지 요구 등 국내 필요성에 의하여 이를 일반법인 관세법에 규정하여 확대 적용

4.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'담보제공 후 통관' 제도

- 현행 관세법상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으로 의심되어 수출입통관 절차가 보류되더라도 당해 수출입자가 담보*를 제공할 경우는 당해 물품의 통관이 가능

* 당해 물품 과세가격의 150% 수준의 금전 등 제공
(지재권자가 통관보류요청시에는 120% 수준의 금전을 담보로 제공)

- 통관보류제도는 지재권 침해여부에 대한 최종 사법판단 이전의 잠정적인 권리구제수단이므로

- 지재권자와 수출입자의 이익의 균형을 위하여 수출입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통관이 가능하도록 규정

- 하지만, 위조상표 또는 유사상표 부착 물품, 저작권 침해 불법 복제물은 지재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로서

- 이러한 경우까지 담보제공후 통관을 허용하는 것은 수출입자의 이익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이므로 담보를 제공하더라도 통관시킬 수 없도록 제한

* 한미FTA 지재권 분야 협상에서 위조상표 또는 유사상표 부착물품, 저작권 침해 불법 복제물 등에 대하여는 담보를 제공하더라도 통관을 불허하도록 합의

5. FTA 관세특례법* 주요 개정 사항

*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특례법

- 신속한 통관을 위해 FTA 특혜세율 신청절차를 간소화
 - 통관전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사후에 원산지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특혜세율 적용 신청 가능
 - 특혜세율의 적정성은 통관이후에 심사하도록 명문화
 - 신청절차 간소화에 따른 원산지 허위신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반시 벌칙 조항 강화
 - 처벌 대상에 원산지증명서 부정발급신청자 뿐만 아니라 원산지 증명서류 부정 발급자까지 처벌하도록 개정
 - 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도 처벌 대상에 추가
 - 한-미 FTA 협정 사항 반영
 -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조치* 절차 규정 등
- * 대상물품이 미국으로부터 기준물량 초과하여 수입되는 경우 한-미 FTA에서 양허된 관세율 이상으로 관세 부과하여 국내 농업 보호

6. 최빈개도국 특혜관세 공여 확대

- '00년부터 '최빈개도국*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(대통령령)'을 제정하여 WTO 권고품목(HS 6단위 기준 116개)중 커피, 원목 등에 대해 무관세 혜택 부여

* 최빈개도국 : 아프리카 35개국, 아시아 14개국, 중남미 1개국

- '07년 현재 5,052 품목 중 93개 품목(1.8%)에 대해 무관세 적용

□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관세 공여 확대 배경

① GDP 및 교역규모 증가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상승

* 미, EU, 일 등 주요 선진국도 일부 민감품목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품목에 대해 무관세 적용

② '05 .12월 홍콩 WTO 각료회의시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관세 혜택 확대에 합의

③ '06. 3월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시 "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 이니셔티브"에서 최빈국에 대한 무관세 확대 발표

□ 우리나라의 對최빈개도국 교역 현황

(단위 : 백만 달러)

	2000년	2001년	2002년	2003년	2004년	2005년
수출액	2,520	3,098	2,657	2,886	4,925	5,004
수입액	1,828	996	989	900	1,011	1,122
무역수지	692	2,102	1,668	1,986	3,914	3,882

* '05년 기준으로 對최빈개도국 수입액은 전체 수입액의 0.43%에 불과